

(별표 1) 의과대학 교원 자격기준

1. 교원 직급별 교육·연구경력

- 가. 교수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만 17.5년 이상의 교육·연구경력
- 나. 부교수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만 13년 이상의 교육·연구경력
- 다. 조교수 : 만 8년 또는 6.5년 이상의 교육·연구경력
- 라. (삭제)

2. 교원 신규임용 자격 기준

- 가. 의과대학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 지원시 상근하는 근무지에 따라 자격기준을 별표 3과 같이 구분한다. 단, 삼성융합의과학원 근무 교원은 따로 정한다.
- 나. 연구실적 인정기간의 기준일자는 접수마감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- 다. 군복무 면제자 또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졸업동기생이 졸업후 군복무 의무연한에 있는 기간동안은 교원으로 신규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라. 신규임명 예정자의 직급은 원칙적으로 교육·연구 경력을 기반으로 산정된 직급에 따라 부여한다.
- 마. 타대학 졸업자(4년제)의 신규 또는 승진임용시 의학계 학제 6년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추어 심의한다.

3. 교원 승진 자격기준 :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전임교원임용심사내규」를 준용한다.

- 가. 박사학위 미소지자(외국 전문의 자격인정자 제외)는 부교수이상의 직급에 승진할 수 없다.
- 나. (삭제)
- 다. 연구실적으로 간주되는 논문종류는 원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증례보고 또는 종설도 예외적으로 연구 실적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 반영여부는 학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.
- 라. 연구업적으로 인정된 증례보고, 종설등의 합계는 100%를 넘지 못한다.